

『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2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안전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으며, 또한 인천시는 항만, 항공, 에너지, 물류, 교통, 산업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원도심이 산재한 지역 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
- 따라서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인적·물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,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

- 기관 단체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는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,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운영함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·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2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
3.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

2.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
3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및 참여
4. 재난 발생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·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
5.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제4조(운영)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 :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.
2. 재난 발생시 : 민간단체, 기업,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.

-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

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- 제12조의2(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중앙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조례안 제2조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
- 위원회 수당 : 12,000,000원
 - ※ 산출근거 : 100,000원(2시간) × 30명 × 4회 = 1,200,000원/년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제정 이후로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수당 등 외에는 특별한 소요예산이 없으므로 예상되는 비용은 1억원 미만임

4. 작 성 자

-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